

2015년판 『실내건축기사』 1차 정오표 [2015.2.14.]

page	오	정	비 고
[일반] 216	(2)기둥...②.. ~ 원형기둥에서는 6개 이상	원형기둥에서는 4개 이상(나선철근 : 6개 이상)	
[법규] 267		☞ 하단참조	법 개정
268	※ 다중이용건축물의 정의 중에서...	운수시설(여객용시설만 해당)	
273		☞ 하단참조	법 개정
293	5. ②..㉠ 중에서	여관, 여인숙 ... 삭제	법 개정
301		☞ 하단참조	법 개정
303	[5] 소방용기계·기구	[5] 소방용품	법 개정
311		☞ 하단참조	

☞ 하단참조 내용

[법규 개정, 신설사항에 유의하여 시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!!]

☞ 267p [표] 수정부분(지방건축위원회)

②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(단,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두는 지방건축위원회는 제외) **삭제**

④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

☞ 273p [표] 수정부분(1. 및 8.항 추가)

1. 구조계산에 의한 구조안전의 확인 대상 건축물

구 분	구조계산 대상 건축물
1. 층수	3층 이상 (대지가 연약하여 건축물의 구조안전을 확보할 필요 있는 지역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지역: 2층 이상)
2. 연면적	1,000㎡ 이상인 건축물(창고, 축사, 작물 재배사 및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)
3. 높이	13m 이상
4. 처마높이	9m 이상
5. 경간	10m 이상 *경간 :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(기둥이 없는 경우에는 내력벽과 내력벽 사이의 거리를 말함)
6.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진구역의 건축물	
7.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박물관·기념관 등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,000㎡ 이상인 건축물	
8. 특수구조 건축물 중 3m 이상 돌출된 건축물과 특수한 설계·시공·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	

☞ 301p [표] 수정부분

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

관계전문기술자	건축물의 규모	용도 및 협력사항
건축구조기술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6층 이상 건축물 • 특수구조 건축물 • 다중이용 건축물 • 지진구역의 건축물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	

☞ [참고]

▶ 특수구조 건축물

- ①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(支持)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·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m 이상 돌출된 건축물
- ②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(기둥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하며, 기둥이 없는 경우에는 내력벽과 내력벽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함)가 20m 이상인 건축물
- ③ 특수한 설계·시공·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로 된 건축물

☞ 311p 수정부분

[5] 소방용품

소방시설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

☞ 311p 수정부분

(1)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

- ① 근린생활시설 중 안파서술소 및 체력단련장, 숙박시설,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
- ②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문화 및 집회시설, 종교시설, 운동시설(수영장은 제외)
- ③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, 정신의료기관(입원실이 없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은 제외), 노유자시설 및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
- ④ 다중이용업의 영업장
- ⑤ 상기 ①부터 ④까지의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층수(건축법시행령에 따라 산정한 층수)가 11층 이상인 것(아파트는 제외)

⑥ **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**

☞ 교재 내용(311p) 중 안파서술소...삭제하고 ⑥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... 추가합니다.

☞ 최근 개정, 신설된 법 주요내용 추가정리

▶ 특수구조 건축물

- ①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(支持)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·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m 이상 돌출된 건축물
- ②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(기둥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하며, 기둥이 없는 경우에는 내력벽과 내력벽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함)가 20m 이상인 건축물
- ③ 특수한 설계·시공·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로 된 건축물

▶ 실내건축

건축물의 실내를 안전하고 쾌적하며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, 천장재, 바닥재, 유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재료 또는 장식물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.

- ① 벽, 천장, 바닥 및 반자틀의 재료
- ② 실내에 설치하는 난간, 창호 및 출입문의 재료
- ③ 실내에 설치하는 전기·가스·급수(給水), 배수(排水)·환기시설의 재료
- ④ 실내에 설치하는 충돌·끼임 등 사용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시설의 재료

▶ 건축물의 범죄예방(법 제53조의2, 영 제61조의 3)

-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,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
-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건축물은 상기 ①의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.
 1. 공동주택 중 세대수가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
 2.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
 3.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
 4. 문화 및 집회시설(동·식물원은 제외)
 5. 교육연구시설(연구소 및 도서관은 제외)
 6. 노유자시설
 7. 수련시설
 8.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
 9.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